

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

1. 임상병리사

가. 기생충학·미생물학·법의학·병리학·생화학·세포병리학·수혈의학·요화학(尿化學)·혈액학·혈청학 분야,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·뇌파·심전도·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·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검사물 등의 채취·검사
- 2) 검사용 시약의 조제
- 3) 기계·기구·시약 등의 보관·관리·사용
- 4) 혈액의 채혈·제제·제조·조작·보존·공급

나. 그 밖의 화학적·생리학적 검사

2. 방사선사

가. 방사선 등의 취급·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·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·관리
- 2)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
- 3)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
- 4) 전리방사선(電離放射線,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)·비전리방사선의 취급

나.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·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·관리에 관한 업무

3. 물리치료사

가.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물리요법적 기능훈련·재활훈련
- 2) 기계·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
- 3) 도수치료: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
- 4) 도수근력(손근력)·관절가동범위 검사
- 5) 마사지
- 6)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·약품의 사용·관리

- 7) 신체 교정운동
- 8) 온열·전기·광선·수(水)치료
- 9) 물리요법적 교육

나.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

4. 작업치료사

가. 신체적·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감각·지각·활동 훈련
- 2) 삼킴장애 재활치료
- 3) 인지 재활치료
- 4) 일상생활 훈련: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
- 5) 운전 재활훈련
- 6) 직업 재활훈련
- 7) 작업수행능력 분석·평가
- 8)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·관리
- 9)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
- 10) 작업요법적 교육

나. 그 밖에 신체적·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·치료에 관한 업무

5. 치과기공사

가. 치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(CAD/CAM), 삼차원(3D)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, 제작,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

- 1) 교정장치·충진물(充填物)·작업 모형
- 2) 보철물
- 3)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(支臺柱, 인공치관과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구조물)·상부구조

나. 그 밖에 치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, 제작, 수리 또는 가공에 관한 업무

6. 치과위생사

가.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교정용 호선(弧線: 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)의 장착·제거

- 2) 불소 바르기
- 3)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
- 4) 임시 충전
- 5) 임시 부착물의 장착
- 6) 부착물의 제거
- 7) 치석 등 침착물(沈着物)의 제거
- 8) 치아 본뜨기

나.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

7. 보건의료정보관리사

가.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보건의료정보의 분석
- 2) 보건의료정보의 전사(轉寫)
- 3) 암 등록
- 4) 진료통계 관리
- 5) 질병·사인(死因)·의료행위의 분류

나.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업무

8. 안경사

가. 안경(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조제(調製)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(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
- 1) 안경의 조제 및 판매. 다만,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·판매해야 한다.
- 2) 콘택트렌즈의 판매. 다만,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.
- 3) 안경·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(主觀적)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
- 4) 안경·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(客觀적)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

나.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